

평창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127

제출년월일: 1999년 월 일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개정이유

99.8.9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액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법률의 미근거 및 중복규제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완화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함

2.주요골자

가.행정규제개혁완화를 위하여 일부조항 삭제

-분뇨관련영업허가조항(제7조) : 상위법과 중복

-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(제8조) : 상위법미근거

-처리실적보고조항(제9조) : 상위법에 미근거

-청문조항(제13조) : 상위법과 중복

다.과태료부과기준(안제15조) : 99. 8. 9 동법시행령개정

3.참고사항

가.관련법령 : 별첨(관련법령발췌서)

나.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관련부처승인 : 해당없음

라.입법예고 : 필요없음

마.신구문대비표 : 별 첨

평창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분뇨관련영업허가)를 삭제한다.

제8조(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·감독)를 삭제한다.

제9조(처리실적 보고)를 삭제한다.

제13조(청문)를 삭제한다.

제15조(과태료 부과기준)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과태료 부과금액 및 항목별 부과기준은 영 제35조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7조(분뇨관련영업허가)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하는 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</p>	<p>제7조(분뇨관련영업허가) 삭 제</p>
<p>제8조(분뇨관련 업업자에 대한지도감독) 군수는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업업자에 대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도모,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.분뇨의 수집·운반·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.기타 분뇨관련 영업에 수반하는 업무 	<p>제8조(분뇨관련업업자에 대한지도감독) 삭 제</p>
<p>제9조(처리실적보고)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처리 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</p>	<p>제9조(처리실적보고) 삭 제</p>
<p>제13조(청문)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구술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3조(청문) 삭 제</p>
<p>제15조(과태료부과기준)① 생략</p> <p>②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고 100만원까지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</p>	<p>제15조(과태료부과기준)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과태료부과금액 및 항목별 부과기준은 명제35조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한다.</p>

관계법령발췌서

□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

제35조 (분뇨 등 관련영업) ①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·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·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(이하“분뇨 등 관련영업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- ⑤ (생략)

제35조의3(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) ①분뇨등 관련영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.

②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(종사자를 포함한다)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

제27조의2(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조건)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, 오수처리시설·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, 분뇨·축산폐수 또는 오니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,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, 분뇨·축산폐수·오니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다만, 분뇨등 처리업 및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5조(과태료의 부과 등) ①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이의방법·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8과 같다.

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